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,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, 정년잔여기간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예퇴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기관 자율화(안 제5조 제1항 개정)

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(홀수달 1~15일) 및 명예퇴직 예정일(짝수달 말일)을 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게 함

나. 환수금 경과월수에 대한 정의 명확화(안 별표4 비고2 신설)

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경과월수 기준을 “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이 속하는 달까지”로 구체화 함

다.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(안 제3조 제4항 제3호 개정)

정년과 임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이 불명확하였으나, 정년과 임기만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

라.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명확화(안 제3조 제1항 단서 개정)

명예퇴직을 하고 즉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전액 환수된 사람에 대해 재차 명예퇴직 발령을 하지 않도록, 전액 환수된 경우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

- 마. 명예퇴직수당 환수기한의 통일적 운영(안 제9조의4 제2항 개정)
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시 재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, 환수기한 기준을 동일하게 함
- 바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시 통지 절차 마련(안 제8조 개정)
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알리고 있는 것처럼,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도 통지하도록 함
- 사. 기타 미비사항 정비
- 1)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특례(제6조제2항) 적용시 '제6조제1항'의 예외로 규정되어야 하나 '제6조'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, 형식상 입법체계를 정비(안 제7조의2 제1항)
 - 2) "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"을 "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문구 정비(안 제9조의4 제2항제2호 및 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7. 6. ~ 8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(법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을 환수한 사람을 포함한다.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:”을 “정년과 임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: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6조”를 “제6조제1항”으로, 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”을 “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때”를 “때 및 제9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”로 한다.

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임용일”을 “환수고지서를 받은 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”을 각각 “지급중앙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4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 월 수”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「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7조 제2호 및 제17조는 폐지한다.

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	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
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(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으로서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,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(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·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<u>사람은</u> 제외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(법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을 환수한 사람을 포함한다.)---.</u>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· 2. (생략)

3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
검사 및 수사관: 정년퇴직일과
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
날

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
한 사항) ① 명예퇴직수당의
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
일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중앙
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
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
려울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
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
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7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
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
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
례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
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
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
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
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정년과 임기가 동시에 적용
되는 공무원 : -----

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
한 사항) ① -----

----- . 다만, 중앙
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
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
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
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달리 정
할 수 있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
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
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
례) ① -----

----- 제6조제1항-----

----- 제6조제2항에 따라 명
예퇴직수당 지급신청-----

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(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9조의4(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) ① (생략)

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) -----

----- 때
및 제9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
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
때-----

-----.

제9조의4(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를 발급해야 하며,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: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

③ (생략)

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-----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 지급중앙행정기관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지급중앙행정기관-----
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02